



재정경제부

보도자료

- 풍요로운 나라
함께하는 선진경제
- 고품질 정책으로
신뢰받는 재경부

보도일시 2007. 6. 1(금) **조간부터**

생 산 일	2007.5.31(목)	생산부서	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
담당과장	유재수 과장 (2150-2330)	담 당 자	윤상기 사무관 (2150-2335)

제목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□ 정부는 신용평가 기초 정보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의 유통 및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감독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5일부터 입법예고함

[개정 배경]

□ 신용정보인프라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요소

○ 정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 문제 재발 방지,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을 적극 추진*

* 개인신용정보 전문회사(KCB) 설립 허가(05.3월), 중소기업신용정보 전문회사(KED) 설립 허가(05.7월) 등

□ 그러나,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충분히 집중되지 못하여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에 애로

- 신용정보회사(Credit Bureau)는 일천한 역사*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부족

* 신용정보산업 역사: 미국 120년, 독일 80년, 영국 45년, 한국 10년 등

- 획일적인 규제체계도 타겟 마케팅, 소매금융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에 대한 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키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

[개정 방향]

-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신용도에 근거한 선진화된 금융거래관행 정착

- 부정적 정보(예: 연체기록 등) 위주로 구축된 신용정보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신용정보를 확충

- 신용정보의 유통·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합리화

- 신용정보 이용 촉진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 마련 및 감독규정 정비

※ 법제처가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” 추진 계획에 따라 표현을 쉽게 하도록 지적한 사항도 일부 반영

[개정안 주요내용]

①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 기초정보의 확충

○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기반 강화

- (현 행) 현재 국세·관세·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됨
- (개 선) 고객(개인 또는 기업)이 금융기관에 거래를 신청하고 자신의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공공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

공공기관이 보유정보*를 신용정보 집중기관·CB 등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함

- * 활용대상인 공공정보의 종류, 제공기관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것이며 주로 기업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제공할 예정
(개인) 사망자 정보 등
(기업) 고용·산재보험 납부실적 및 사업장정보, 수출입 실적, 정부조달실적, 전력·가스사용량 등

② 신용정보의 유통·이용 관련 규제 합리화

○ 신용정보 제공·이용에 대한 동의방식 다양화

- (현 행)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상거래 설정·유지 판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취득해야 함
- (개 선)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동의방식 도입함
(구체적인 동의방법*은 금감위에 위임)

- * 예) 녹취, 휴대폰 ARS 동의

○ 신용정보 이용목적에 대한 규제 합리화

- (현 행)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·이용되어야 함
- (개 선) 금융기관이 자사고객에게 자사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편 등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방법일 경우에만 (기타 휴대폰을 통한 마케팅은 별도의 고객 동의 필요) 제한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*

* 자사고객·자사상품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

③ 개인 사생활 보호·강화

○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규제의 조정

- (현 행)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(이하 CB) 등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CB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때는 동의가 불필요
- (개 선) 고객의 동의를 금융기관이 CB로부터 신용등급 등을 조회(예: 신규대출 시점)하는 단계에서도 받도록 변경

○ 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철회권 도입

- (현 행) 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이의 철회·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음
- (개 선)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 (Do-Not-Call제도)

○ 금융거래 거절·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제공

- (현 행)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을 거절·중지당하는 경우 판단의 근거를 제공받을 명확한 규정이 부재
- (개 선) 금융기관이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요청시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부과

○ 신용정보 무료열람권 신설

- (현 행)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
- (개 선) 신용정보주체가 CB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

④ 인허가 및 감독규정 정비

○ 신용정보업 일부 양수도시 금감위 인가 취득 의무화

- (현 행) 신용정보회사가 인가받은 사업 전부를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
- (개 선) 신용정보업 일부 양도·양수의 경우에도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요건 강화

- 영업기간 동안 인적·물적 시설 요건 유지 의무 신설
 - (현행) 허가 요건의 하나인 인적·물적시설 요건을 영업기간 동안 충족하도록 한 조항이 부재
 - (개선)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인적·물적 시설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

[개정 추진경과]

① 「신용정보인프라 종합개선방안」 용역 및 공청회

-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마련된 「신용정보인프라 종합개선방안」(06.4~06.10) 내용과
- 업계·학계·언론계·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신용정보제도개편 관련 공청회(06.11.15)에서 제시된 의견도 폭넓게 수렴

② Zero-Base 금융규제개혁 과제

-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집중 추진해 온 「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」에서 발굴된 과제* 반영
 - * 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방식 개선, 신용정보 이용목적 규제 개선 등

③ 기타 관계부처 협의, 「신용정보제도개선 민관T/F」 등을 통해 합의·정리된 과제

- * 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, 인허가 요건 및 감독조항 정비 등

⇒ 이상과 같은 입법수요들을 종합적으로 검토·반영하여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(안)을 마련

□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7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

※ 본 개정내용은 입법예고,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